

##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현황 조사 관련 Q&A

**Q. 2023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는 신규 지정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 현황을 제출하면 되는지?**

A. 2023년도 신규 공직유관단체는 [1번]시트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 감독기관의 취합방법**

A. 공직유관단체 소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관리하는 소관 교육청 및 교육부는 해당 소관기관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하나의 엑셀파일로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합 예시

연번	기관유형	기관명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은 건수(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통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임이 확인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건수(㉒)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건수(㉓)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한 경우(㉔)	제한대상이 아닌 건수(㉕)	비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㉖)	계약업무 법령상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 등(㉗)	감독기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㉘)	모회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㉙)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㉚)	지방의회의원과 그 가족 등(㉛)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시 ○○구	110	0	0	0	0	0	0	0	0	110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구시설안전관리공단	45	0	0	0	0	0	0	0	0	45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구자원봉사센터	10	0	0	0	0	0	0	0	0	10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재)○○문화재단	15	0	0	0	0	0	0	0	0	15	

**Q. 2022년도 제출 자료가 잘못된 경우 올해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면 되는지?**

A.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고위공직자 수를 잘못 파악했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이하 '수의계약 확인서') 제출받은 건수를 잘못 취합한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올해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고위공직자 판단기준**

A.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와 일치합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이라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고위공직자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 소속기관의 재산등록·공개 관련 업무 담당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Q. 우리 기관은 고위공직자가 1인이나 현재 공석이며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3번]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A. 고위공직자 직위의 직무대리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D열 부분은 1로 작성하고, E열 이후는 직무대리자를 제외한 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우리 기관의 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고 있음. 우리 기관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고위공직자는 우리 기관에서의 직위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이며, 그가 겸직하는**

직위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고위공직자 직위가 아니라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대 A지방자치단체장이 B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나 B재단의 이사장은 재산공개 대상 직위가 아닌 경우, B재단은 이사장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에는 조치결과에 '기타'항목이 있는데, 운영현황 제출 엑셀파일 [2번]시트의 '조치건수 및 사유'에는 기타 항목이 없음

A. '조치결과 통보서'의 '기타' 항목은 엑셀파일 [2번]시트의 F열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F열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 임시직 또는 초단기 근로자 등 채용시에도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이하 '가족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가족채용 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유형의 채용에 대해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임시직, 단기, 초단기 근로자 등 채용시에도 모두 해당합니다.

Q.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이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아닌 경우 가족채용 확인서를 모두 제출받아야 하는지?

A. 그렇습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채용 중,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시험 등을 거쳐 채용했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에 근거한 채용이 아닌 경우라면 가족채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Q. 단기 강사 위촉시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A. 강사 위촉이 임시직·계약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가족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채용은 아니나 '용역 계약'의 성격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Q. 수의계약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

A.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회계부서에서 대금지급만 담당하는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수의계약 확인서를 모두 취합하여야 하는지?

A. 소속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소속기관의 계약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확인서를 제출받은 건수도 취합하여 합계 건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Q.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금번 운영현황 자료 제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 및 계약담당자에 변동이 없어 확인서를 반복 해서 제출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5번]시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은 건수'는 무엇일지?

A. 실제 수의계약 체결 건수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10회이나, 확인사항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확인서를 받은 건수는 2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5번] 시트의 D열에는 10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Q. 기관 내 종합감사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위반건수의 경우 6번 시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A. 제외하여 주십시오. 6번 시트에는 위반신고를 통해 처리한 건수의 경우만 포함하여 집계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위반신고를 접수한 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①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결한 경우 ②징계절차 진행 중이고 과태료 관할 법원에는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③징계처분이 내려졌고,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으나 종결되지 않은 경우 [6번]시트의 F열 이후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지?

A. 다음의 작성례를 참고 바랍니다.

① 기관 조치 현황 : 소계=1, 종결=1 / 이하=0

② 기관 조치 현황 : 소계=1, 조사중=1 / 이하=0

③ 기관 조치 현황 : 소계=1, 과태료 관할법원 통보=1 / 수사 및

재판 결과 : 소계=1, 재판중=1 / 징계결과 : 징계현황=1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 전화 문의 : 044-200-7674, 7679

☎ 메일 문의 : csy1009@korea.kr